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3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21.

발의자 : 김성원 · 박대수 · 김용판
김희곤 · 최영희 · 정우택
최춘식 · 지성호 · 김태호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를 지원하고,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·지원하고 있음.

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에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, 전통시장 역시 점포 누수,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, 이에 비해 풍수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풍수해로 인한 피해

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0조, 제20조의2, 제24조의3, 제65조, 제67조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화재”를 “화재·풍수해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화재”를 “화재·풍수해”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”를 “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풍수해공제의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“화재예방”을 “화재·풍수해예방”으로, “전기·가스·화재”를 “전기·가스·화재·풍수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또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화재보험협회”를 “한국화재보험협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)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풍

수해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제4항제6호 중 “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”을 “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”로 한다.

제67조제1항제2호 중 “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”을 “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전기안전공사, 「고압가스 안전 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,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,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,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한국화
재보험협회, 「재난 및 안전관
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나목에
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

③ (생 략)

<신 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운영지원)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풍수해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65조(상인회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1. ~ 5. (생 략) 6. <u>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</u> 위한 체계 구축 · 운영에 관한 업무 7. (생 략) ⑤ ~ ⑫ (생 략)	제65조(상인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</u> <u>안전관리를</u>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⑤ ~ ⑫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시장관리자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<u>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</u> 위한 체계 구축 · 운영, 청소 및 방범 활동 3. ~ 5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67조(시장관리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</u> <u>안전관리를</u>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